

#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김승래<sup>1)\*\*</sup> · 김성태<sup>2)\*\*\*</sup> · 임병인<sup>3)\*\*\*\*</sup>

An Analysis of Income Tax Incentives on Green Consumption

Seung-Rae Kim<sup>1)\*\*</sup> · Sung Tai Kim<sup>2)\*\*\*</sup> · Byung In Lim<sup>3)\*\*\*\*</sup>

1) 한림대학교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Hallym University)

2) 청주대학교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Cheongju University)

3) 충북대학교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Chungbuk University)

제출: 2014년 5월 9일    수정: 2014년 8월 8일    승인: 2014년 9월 3일

##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총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주제어** | 환경친화적 소비, 경제적 유인체계,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 시나리오 설계, 경제적 파급효과

## Abstract

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Keywords** | Green Consumption, Market-Based Incentives, Income Tax Benefits, Scenario Design, Economic Effects

\* 본 논문은 한국재정학회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과제(과제명: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설계 및 파급효과』)(2012. 3)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1-330-B00062).

\*\* 제1저자, srkim@hallym.ac.kr

\*\*\* 공동저자, stkim@cju.ac.kr

\*\*\*\* 교신저자, billforest@hanmail.net

## I. 서론

환경친화적인 소비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녹색생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행동 및 실천의지는 부족하다는 것이다(기든스 딜레마). 실제로 친환경에 부합하는 생활은 번거롭거나 어렵고, 친환경제품은 비싸거나 구매처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녹색생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88.4%가 공감하고 있으나, 친환경상품은 비싸다는 인식이 전체의 64.5%에 달하고, 녹색생활 실천지수는 30%에 불과하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

따라서 녹색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높은 녹색생활과 실제 구입행위를 연계시키기 위한 유인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환경친화적 소비 권장을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 그린마일리지 제도, 탄소캐쉬백 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탄소포인트 제도와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환경부(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 탄소캐쉬백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술한 세 가지 제도를 개괄하고, 이어서 해외 사례를 논의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탄소포인트 제도는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하여 탄소 포인트를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209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동참하고 있다(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참조). 탄소포인트제도 관련 인센티브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에코머니 포인트, 미발급자는 현금 외 다양한 선물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개인 및 세대주, 상업시설 소유자 및 사용자이다. 실시 항목(모든 기초지자체 참여)은 전기, 수도, 가스 중 지자체가 선택한다. 가입가구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경부 프로그램 2,414,326세대,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1,418,638세대, 총계 3,880,157세대이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 톤(소나무 약 1억6백만 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16억kwh(약 2,000억 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환경부 보도자료, 2014.2.17., p.2).

둘째, 탄소캐쉬백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이 자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CO<sub>2</sub> 마크가 붙은 저탄소제품을 구

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포인트를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탄소캐쉬백 가맹점과 OK 캐쉬백 가맹점(주유소 제외), 대중교통, 저탄소 공익프로그램, 지자체 녹색사업, 지방세 납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2010년 말 현재 에너지 고효율 제품생산기업 28개와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캐쉬백 대상제품은 생산 또는 소비 등 기업활동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상제품(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법령에 따라 저탄소상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예, 환경부 탄소성적표지제품), 리필표시제품, 그밖에 온실가스 저감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공익활동 적립금이 탄소캐쉬백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조성될 수 있고, 그 규모는 탄소캐쉬백 포인트 적립액의 10%, 사용용도는 온실가스 저감용 저탄소 녹색공익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몇몇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소비 권장 정책을 개괄해본다. 먼저 일본은 친환경 상품(예, 에어컨, 냉장고, 평면TV의 3개 품목) 구입에 대해 구입금액의 5%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에코포인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sup>1)</sup>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하여 201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1년 12월까지 연장되었고, 포인트 대상이 일부 확대되었다.<sup>2)</sup>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성은 2010년 3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친환경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에코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sup>3)</sup> 이 때 지급된 포인트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교환하거나, 다른 개축공사 대금으로 충당될 수 있었다. 예산 규모는 100억 엔으로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관리한다.

영국은 친환경 소비 진작을 위하여 탄소 라벨링과 스마트미터기 등을 도입하고 있다. 탄소라벨링은 제품의 원료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sup>4)</sup> 테스코(TEESCO)가 자회사 제품에 탄소감축라벨을 최초로 부착한 이래, 약 60개 제조업체 2,500개 이상의 소비재가 인증되었다. 2008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가 탄소라벨을 인식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65%는 탄소라벨이 제품의 판매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했

---

1) 국제무역연구원(2009).

2) KOTRA 해외시장정보(<http://www.globalwindow.org>, 2011. 2. 24).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5. 3)을 참고

4) 배순영, 김재영, 송민수(2009), pp.149-152.

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19년까지 전 가구에 가스 및 전기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해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1/3 이상 감소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sup>5)</sup>

미국은 에너지 효율 개선 가구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경기부양법」에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각 가정에 최대 \$1,500까지 30%의 세금공제를 추진하였다.<sup>6)</sup>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원과 친환경 산업 부흥 및 각 가정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개선을 함께 고려한 임시 정책이다. 2010년 5월 통과된 Home Star 프로그램 법안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 가구에 환급금을 제공하고 있다.<sup>7)</sup> Silver Star 프로그램의 경우, 각 가정이 고효율 창문, 문, 단열재, 온수기 등을 구입 및 교체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대 \$3,000의 환급금을 제공한다. Gold Star 프로그램의 경우, 주택 에너지 효율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받고, 에너지비용을 20% 절감한 주택 소유주에게 \$8,000의 환급금을 지급한다.<sup>8)</sup>

캐나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장원재, 한상용, 박준식, 2009, p.16). 2006년 7월부터 버스·지하철·통근열차·선박을 이용했을 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당해 최저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고,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돌아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제품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소비를 경제적 유인체계(market-based instrument) 중의 하나인 소득세제 지원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뒤, 각 방안별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소득계층별 세 부담 변화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5) 스마트미터기는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 및 탄소발생량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량기 및 자료 전송 시스템이다. 스마트미터기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정보가 사용자의 휴대전화기나 컴퓨터 등으로 전송된다. 에너지 공급자의 계측 인력 절감 및 실시간 수요 예측으로 공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경우에도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사용량 조절을 기대한다. 매년 260만 가구씩 향후 10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로운 기기 설치비용은 70~90억 파운드에 이르나 도입될 경우 영국 전체에 25~36억 파운드의 순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KOTRA 해외시장정보(<http://www.globalwindow.org>) (2011. 4. 4) 참조

6)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1. 22).

7)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5. 14).

8)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일반 소매품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 성격이 아니고 경기부양을 위한 임시정책의 성격과 가정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목표가 혼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친환경소비 권장과 특정목적에 위한 소득세 지원 정책 관련 문헌들을 각각 살펴보고, 본 논문과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2010년 적용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개관해보고, 소득세제에서의 소득공제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에 근거하여 4개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그에 관하여 상술한다. 제Ⅳ장에서는 4개 시나리오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한 뒤, 결론 맺는다.

## Ⅱ. 기존 연구 개요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먼저 환경친화적 소비행위의 권장 정책과 관련된 연구로는 계선자, 강기정(1998), 계선자(1999), 문승식(2008), 손상희 외(2010), 전예화, 제미경(2012) 등이 있다. 계선자, 강기정(1998)은 도시주부의 가치성향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 행동에 관해 연구하여 가치성향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4.45점, 환경친화적 소비 행동의 평균점수는 3.62점 등임을 밝혔다.

계선자(1999)는 후기산업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역할 수행과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련된 변인을 통계분석 등으로써 조사 분석하여 소비절약 의식을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문승식(2008)은 저탄소 환경친화적 소비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의 성과를 진단하고 저탄소 환경친화적 소비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손상희 외(2010)는 환경친화적 소비역량을 “소비의 전 과정에서 생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소비자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한 뒤, 환경친화적 소비역량의 개념적 구성틀과 이론적·실증적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역량 지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환경친화적 소비역량 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지표 3개, 중지표, 8개, 소지표 20개, 측정요소 40개로 구성된 환경친화적 소비역량 구성체계를 확정, 논의하였다.

전예화, 재미경(2012)는 환경친화적 소비 실천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소비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면서 유아기의 환경친화적 소비 실천교육이 환경 및 보존습관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주제와 유사하게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제도를 분석한 연구로 임봉옥(1992), 정요섭(1993), 손광락(1999), 박춘래, 이은호(2004), 안종범 외(2004), 이동식(2004), 임병인(2010) 등이 있다. 임봉옥(1992)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제도를 논의하면서 소득세가 보험가입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정요섭(1993)은 보험료공제제도의 상한액 인상(24만 원→50만 원)의 절세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보험가입자의 소득,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수에 따라 절세효과가 다름을 보였다.

손광락(1999)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고, 박춘래, 이은호(2004)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라는 구체적인 공제 항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동식(2004)은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종범 외(2004)는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연계한 개산공제제도를 제안하고 모의 실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제시하였고, 임병인(2010)은 현행 소득세제의 특별공제항목 중의 하나인 보험료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한편, 환경문제를 세제 지원제도와 같은 조세정책을 통하여 달성해야 함을 논의한 연구로는 이현우(2010), 유태현(2010), OECD(2011) 등이 있다. 이현우(2010)는 친환경 세제로서 환경문제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환경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태현(2010)은 지방세제 가운데 소비과세에 한정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한 개편방향을 제언하였다.

OECD(2011)은 OECD국가들이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유인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논의하면서 다른 환경정책수단과 비교하여 조세유인 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환경친화적 소비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친환경상품의 소비라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고 있으나, 친환경 소비권장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소비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정량적 분석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OECD(2011) 등에서 논의

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성과를 위하여 소득세제 공제문헌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고려 가능한 각종 세제지원 도입방안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와 소득재분배(지니계수)효과, 세수효과, 환경친화적 소비 진작효과, 산업전반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 관련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초로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 III. 환경친화적 소비의 소득공제 적용의 기본방향 및 설계

#### 1. 우리나라 소득세제 개요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먼저 2010년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공제항목 중심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아동·경로자·장애인·부녀자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 공제는 납세자 및 부양가족의 특성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최저생활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 특별공제의 경우,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납세자의 담세력 감손을 초래하는 지출항목에 대해 소득과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 비과세하는 제도<sup>9)</sup>인데, 또는 근로소득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한 비용을 보완적으로 추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항목별 특별공제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항목에 대해 비용공제를 인정하므로 사회적으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를 내부화시킬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항목별 특별공제는 지출내역 증빙 및 확인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

9) 김완석(2010), pp.398-399.

표 1 2010년 적용 소득세법의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 내역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배우자</li> <li>• 부양가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li> </ul>	1인당 150만 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li> <li>- 경로우대자</li> <li>- 부녀자 공제</li> </ul> </li> <li>: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li> <li>- 자녀양육비 공제</li> <li>: 6세 이하 직계비속('01.1.1이후 출생)</li> </ul>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 원 • 자녀양육비공제(100만 원)는 교육비와 중복공제허용
소 특 공 제	다자녀 추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li> </ul>	2인 경우 10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과 초과하는 1인당 200만 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li> </ul>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특 별 공 제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li> <li>• 보장성 보험료</li> <li>•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li> </ul>	전액(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
	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li> <li>•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li> </ul>	700만 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아,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li> <li>• 대학생</li> </ul>	1인당 300만 원 한도 1인당 900만 원 한도(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특수교육비</li> <li>• 본인의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li> </ul>	전액
	주택자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li> </ul>	연간 300만 원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기 부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li> <li>• 조특법 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li> <li>• 우리사주조합 기부금</li> <li>•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li> </ul>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한도	

자료: 국세청(2010)



## 2. 환경친화적 소비의 소득공제 필요성과 적용 방향

본 연구의 주제인 환경친화적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득세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해본다. 첫째,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의 실천이 미흡한 '기든스 딜레마'가 상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인지도는 97.2%인데 녹색생활 실천 행동지수 약 30%에 불과하여 인지(태도)와 실천(행동) 간 괴리 극복 위해 일상생활 속 실천 행위가 경제적인 보상체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계선자, 1999; 전예화, 제미경, 2012). 둘째, 현재 가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는 녹색생활 대(對) 국민 설문조사 결과(3,705명, '11.5월), 국민실천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센티브 확대(55%)로 응답한 것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며 이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비과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소비실천에 따른 실질적 혜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 개편 추진을 명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도 부합된다.<sup>10)</sup>

한편, 전술한 대로 친환경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 제만을 유인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소비세이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제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조세를 납부하지만 보통 그 세액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세인 소득세보다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이용한 지원 방식 중에서 왜 공제방식을 활용하는 것일까? 이는 친환경제품의 구매행위가 사회적으로 외부효과를 유발, 즉,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 공제방식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제품 구매 행태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제품은 보통의 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위 소득계층이 더 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제방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10) 동법 제30조에서는 따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높은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행동 변화 분석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부가 바뀐 2014년 소득세법보다는 이전 연도, 여기서 2010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sup>11)</sup> 특히, 2010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녹색성장이 국정지표로 제시된 때가 2008년 8.15경축사인데, 이후 상당기간 녹색성장이 주요 국정지표로 언론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녹색성장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이 최고로 각인된 시기가 2010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전제로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소득세 공제 방향을 논의해본다. 첫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신설은 기존의 소득세제 원칙에 친환경 소비행위에 의한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녹색제품 소비에 사용된 금액 일부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환경친화적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이다(김승래, 2010; 김승래, 김지영, 2010).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의 공제 유형에는 필요경비 공제, 소득과세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른 공제, 기타 과표양성화를 위한 공제가 있다. 필요경비 공제는 과세대상 소득 생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공제란 필요경비가 아니더라도 의료·교육 등 납세자의 담세능력 감손을 가져오는 지출을 일부 비과세하는 원칙이며, 비녹색재화에 대비하여 녹색재화의 소비를 권장하는 취지는 이러한 원칙과 관련이 없다. 과표양성화를 위한 공제원칙은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양성화하여 과세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소비 진작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소비의 소득공제 원칙은 소비자의 경제행위에 있어 환경직접세에 의한 외부성 교정이라는 새로운 관점(환경성)의 접근을 요구된다는 것이다.

11) 주지하다시피 2013년 말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는 35%, 1.5억 원 초과 구간은 38%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둘째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조정하며,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한다. 두 번째, 개정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오래 동안 소득공제, 특히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둘째, 환경친화적 소비의 소득공제는 녹색제품의 생산지원 대비 비용효과성을 고려하고 소비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제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품목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직접 제공하는 정책과 비교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의 소득공제는 간접적이며 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가 생산자 지원에 대비하여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소비를 근본적으로 유도해내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녹색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원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셋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마일리지제도 등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소득계층별로 지원규모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의 규모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누진세율),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소득자에 비하여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의 소득수준 한도(가령, 연소득 5,000만원)를 두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따른 재정지원의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의 최대한도(상한액)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Hybrid 자동차, 전기차 등 특정 친환경자동차, 고효율 전자제품, 친환경 내구재 등 특정제품의 초기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하되 총구매액의 소득공제지원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소비 증가는 비녹색제품 소비에 대한 대체가 강할 경우 동 분야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증가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을 더욱 촉진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와줄 수 있으며, 국가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소비의 권장을 위한 소득공제는 녹색제품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 소비자 홍보 및 교육 강화,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소비의 정보제공 확대 등 기타 정책과 실효성을 조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 3. 환경친화적 소비 제고를 위한 4개의 소득공제 적용 시나리오

전술한 적용 방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특별공제 중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제도를 응용하여 적용한 방안이다. 이는 공제금액의 한도를 설정한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여기서는 친환경제품을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공제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시나리오 2는 특별공제 중에서 의료비 공제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친환경제품 구입액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친환경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입해야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방법이다.

시나리오 3은 세액공제방식을 원용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근로 및 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여기서는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액의 10%와 20%를 환급해주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sup>12)</sup>

시나리오 4는 소득계층별로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구입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고, 중산층은 30%, 고소득층은 5%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소득계층의 구분은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까지를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50%에서 150%까지는 중간소득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정한다. 이 방안은 전술한 환경친화적 소비 공제제도 도입의 형평성 저해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고소득층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가능하면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09년에 폐지된 혼인비용·장례비용·이사비용공제제도와 유사하다.<sup>13)</sup>

12) 2014년 적용 소득세법에서 특별공제의 공제방식으로 된 세액공제방식은 후술하지만 시나리오 3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사용자료만이 2010년 자료일 뿐이지 사실상 2014년 적용소득세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국 Virginia주의 에너지효율적인 제품에 대한 소득세공제(Income Tax Deductions) 제도가 있는데, 소비자가 부담한 판매세의 20%가 연간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환급해준다.

13) 동 공제제도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이사진 경우 각 10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비록 소득기준이 실질적으로 면세점 이하의 자들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유사한 성격의 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물론 시나리오 4는 고소득층에게도 5%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IV.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 1. 사용 자료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환경친화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지원 방안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동 자료는 매월 전국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원이 가구단위로 개별가구에게 가계부 형식으로 기장하도록 조사하여 이를 집계 후 분기별로 가계수지 동향으로 공표하고 연간 단위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관련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1963년 1월부터 통계청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8차례에 걸쳐 표본개편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 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고 있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모집단의 대표성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에 대하여 기초 데이터의 일관성이 보장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유일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제 분석대상 제품인 친환경상품을 정의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친환경상품을 환경표지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GR)제품으로 나누어본다. 환경표지인증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분류로서 201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7,701개 제품이 있다(부록 표 1 참조).<sup>14)</sup> 다음으로 우수재활용제품(GR)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폐지, 폐유리 등 185개 업체 224품목(2011년 11월 30일 기준)이 인증되어 있다(부록 표 2 참조).<sup>15)</sup> 다만, 우수재활용제품은 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즉 주로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중간재 형태의 제품이어서 가구 또는 개인들이 구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불가피하게 환경표지제품에 초점을 맞춘다.

14) 2011년 기준으로 환경표지제품수를 제시한 것은 2010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4년 5월 31일 현재는 1,862개 업체 11,311개 제품(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군)이 환경표지제품으로 등록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15) GR인증제품 역시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폐지, 폐유리 등 17개 분야 279개 품목, 198개 업체 234개 제품이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문제는 환경표지인증제품과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지출항목이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의 지출항목 구분이 친환경상품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나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2010)의 분류를 참조하여 <부록 표 3>에 제시된 지출항목들을 친환경제품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한다.<sup>16)</sup>

## 2. 세부담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본 절에서는 전술한 국내 친환경제품 소비의 각종 세제지원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환경친화적 소비 진작효과, 산업전반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분석을 위한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3은 각각 공제한도를 금액별로 더욱 세분하여 알아본다.<sup>17)</sup>

환경친화적 소비 세제지원은 세부담 혜택으로 인하여 소득계층별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른 소득효과로 소득계층별로 유발되는 수요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민간소비지출을 확대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전반의 생산 및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결합하여 Fullerton(1996) 또는 Metcalf(1999) 등의 투입-산출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였다.<sup>18)</sup> 여기서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제지원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증가의 소득효과로 증가되는 민간소비지출 증가액은 김승래, 전영준, 임병인(2012, p.143)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상품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소득세 지원의 상품별 소비지출 증가액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경제전반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sup>19)</sup>

16) 이는 비록 자료제약은 존재하지만 본 논문이 환경정책 관련 조세제도 설계 및 이에 대한 모의분석이므로 부록에 제시된 지출항목을 친환경소비제품으로 가정하더라도 시나리오별 세부담변화 및 파급효과를 비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7) 본 논문에서 사용한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월별 미시자료에 근거한 가구수는 10,599가구였다.

18) 이러한 경제의 투입-산출분석에 대한 기초적 논의는 Fullerton(1996, Appendix, pp.63-68), Metcalf(1999, pp. 676-678), 한국은행(2013)에서 참조할 수 있다.

19) 이러한 소비변화와 연계된 생산 및 고용연관 파급효과를 위한 산업연관분석은 가장 세부적인 산업분류인 403부문의 공표자료가 이용가능한 2009년 투입산출구조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입-산출분석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실질소득증가( $\Delta I$ )로 인한 상품수요  $i$ 의 소비진작 효과( $\Delta C$ )는 소득계층  $j$ 의 상품수요  $i$ 별 소득탄력성( $\eta_{ij}$ )을 이용하면  $\Delta C_i = \sum_j \Delta C_{ij} = \sum_j \eta_{ij} \Delta I_j$ 이며, 이러한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투입산출계수행렬( $A$ ), 고용계수벡터( $l$ )을 이용하면 각각  $(I-A)^{-1} \Delta C$ 와  $l(I-A)^{-1} \Delta C$ 으로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앞 III장에서 제시한 4가지 세제지원 방식의 시나리오별로 녹색인증제품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에 따라 조세지출액과 소득세 부담의 변화로 발생하는 소득계층별 재분배효과(지니계수)의 변화율은 <표 2>와 같다.<sup>20)</sup>

여기서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변화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 측면의 재분배효과를 보면, 현행 소득세 기준으로 세전 지니계수는 0.36681, 소득세 부과 이후의 지니계수는 0.35620으로 그 재분배효과는 2.894%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시나리오 1의 재분배효과는 각각 공제한도 100만 원의 경우는 2.844%, 공제한도 200만 원의 경우는 2.775%로 나타나 이러한 방식의 녹색인증제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재분배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현행 소득세제로 인한 재분배효과 2.894%에 비교하여 지니계수 개선정도가 각각 0.050%p, 0.119%p 정도가 작아 녹색인증제품 구입액에 대한 일률적인 소득공제 혜택 부여는 재분배효과에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경감된 세부담액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훨씬 크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형태를 응용한 시나리오 2 역시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변화율로 평가한 재분배효과의 크기가 시나리오 1에 비하여 작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감된 세부담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훨씬 크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시나리오 2에서 제시한 공제방식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녹색인증제품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형태를 도입한 것인데, 부가가치세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경우와 20%를 환급해주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현행 소득세 대비 재분배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예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비율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경우의 저소득계층인 1, 2분위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액의 20%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3분위까지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받

20) 소득계층별 세부담과 세수효과는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에 2010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가구별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세수의 변화를 구하고, 또한 가구들은 10분위로 구분하여 계층별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부담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는 소득불평등도(income inequality)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로 측정하는데 평균소득( $\mu$ )과 표본수( $n$ )

에서  $\left[ \frac{1}{n(n-1)} \sum_j \sum_k |I_j - I_k| \right] / 2\mu$ 와 같이 계산된다.

21) 다만, 이 추정결과는 부가가치세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소득세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를 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소득계층들도 납부하는 소득세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액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하여 작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시나리오 4는 전술하였듯이 소득계층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3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녹색인증제품 구입액의 50%, 30%, 5%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다.<sup>22)</sup> 이 시나리오의 추정된 재분배효과는 현행 소득세제와 0.007%p 밖에 나지 않아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소득계층별 경감된 세부담액이 절대금액에서 작고, 또한 계층별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현행 소득세제의 형평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세수입의 감소액도 4,7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감된 세부담액이 고소득층에서 크지 않아 이들 계층에서 녹색인증제품의 소비를 촉발시킬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소득세수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세수입이 변화되는지를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신고분 64,142백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분 6,369,027백만 원, 사업소득세 원천분 1,509,795백만 원, 근로소득세 원천분 15,516,911백만 원으로 합계 23,459,875백만 원으로 전체 소득세수 37.5조 원의 약 6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환산 기준소득을 약 23.5조 원으로 삼는 이유는 분석대상 소득세액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합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산된 총 소득세수를 현행 세제의 전체가구 평균으로 환산하여 시나리오별로 소득세수를 추계한 결과, 시나리오 1은 현행 세제에 의한 소득세수에 비해 공제한도 100만 원의 경우에 약 3,000억 원, 공제한도 200만 원의 경우에 약 1조 2,800억 원의 소득세수가 줄어들며, 시나리오 2는 약 1조 6,500억 원, 시나리오 3의 부가가치세액 1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약 3조 400억 원, 부가가치세액 2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약 6조 800억 원, 시나리오 4는 약 4,700억 원 정도의 소득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친환경제품 구입액의 소득공제 인정은 예상했던 대로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의 수요증대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시나리오 2와 3이 시나리오 1과 4에 비하여 가구당 환경친화적 소비 촉진효과가 크고, 소비지출의 절대금액이 많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22) 시나리오 4는 녹색인증제품 소비액의 20%공제를 저소득층, 10%공제를 중산층, 고소득층은 공제가 없는 것으로 추계해 보았는데, 세액경감액이 천원대에 불과하여 본문에 설명한 대로 공제비율을 높여서 추계한 것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전반의 총소비지출액은 현행 대비 시나리오 1의 공제한도 100만 원 경우에 약 2,800억 원, 공제한도 200만 원 경우에 약 6,100억 원이 늘어나며, 시나리오 2는 7,900억 원, 시나리오 3의 부가가치세액 1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약 1조 4,600억 원, 부가가치세액 2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약 2조 910억 원, 시나리오 4는 약 1,900억 원 정도의 총소비가 진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개 유형의 시나리오별로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유발되는 단위 세수당 소비나 생산 측면의 효율성 개선 정도로 평가해 보면 대체로 비슷하다. 시나리오 1의 공제한도 100만 원 경우에 세수 1단위당 0.475, 공제한도 200만 원의 경우에 0.477, 시나리오 2는 0.479, 시나리오 3의 부가가치세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0.480, 부가가치세액의 2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0.479, 시나리오 4는 0.404 정도 소비가 진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생산유발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나리오 1의 공제한도 100만 원 경우에 세수 1단위당 1.153, 공제한도 200만 원의 경우에 1.148 늘어나며, 시나리오 2는 1.152, 시나리오 3의 부가가치세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1.158, 부가가치세액의 20%를 환급해주는 경우에 1.156, 시나리오 4는 1.000 정도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환경친화적 소비 지원의 시나리오별 소득계층 세부담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현행 세제	소득계층별 혜택 차등화 [시나리오 4]																
		(1)+ 녹색제품 부가가치세 공제 [시나리오 3]																
		녹색제품 구매액 특별공제(1)					의료비 공제방식 [시나리오 2]											
		보장성 보험료 공제방식 [시나리오 1]																
		공제한도 30만 원	세부담 차이	공제한도 50만 원	세부담 차이	공제한도 100만 원	세부담 차이	공제한도 200만 원	세부담 차이	세액	세부담 차이	세액의 10%	세부담 차이	세액의 20%	세부담 차이	세액	세부담 차이	
1분위	1.0	1	0	1.0	0.0	1.0	0.0	1.0	0.0	1.0	0.0	-2.74	3.74	-6.49	7.49	1.00	0.00	
2분위	7.0	7	0	6.8	0.2	6.50	0.50	5.78	1.22	5.98	1.02	-10.36	17.36	-27.73	34.73	6.60	0.40	
3분위	17.0	16.5	0.5	16.2	0.8	15.84	1.16	14.86	2.14	15.39	1.61	0.68	16.32	-15.64	32.64	16.45	0.55	
4분위	28.0	27.8	0.2	27.5	0.5	27.19	0.81	26.34	1.66	26.53	1.47	15.38	12.62	2.76	25.24	27.19	0.81	
5분위	52.0	51.4	0.6	50.9	1.1	50.49	1.51	49.18	2.82	48.57	3.43	37.68	14.32	23.34	28.66	50.16	1.84	
6분위	77.0	76.3	0.7	75.5	1.5	74.63	2.37	72.16	4.84	71.33	5.67	61.47	15.53	45.94	31.06	73.55	3.45	
7분위	125.0	123.6	1.4	122.5	2.5	121.34	3.66	117.99	7.01	116.53	8.47	107.44	17.56	89.89	35.11	120.01	4.99	
8분위	194.0	192.5	1.5	190.2	3.8	187.95	6.05	181.43	12.57	177.88	16.12	169.68	24.32	145.35	48.65	190.72	3.28	
9분위	287.0	284.3	2.7	284.0	3.0	278.71	8.29	263.63	23.37	258.94	28.06	262.82	24.18	238.63	48.37	283.47	3.53	
10분위	639.0	635.2	3.8	631.4	7.6	627.50	11.50	616.11	22.89	603.40	35.60	614.38	24.62	589.76	49.24	634.21	4.79	
전체가구	143.0	142.3	0.7	140.9	2.1	139.44	3.56	135.26	7.74	133.00	10.00	124.53	18.47	106.05	36.95	140.54	2.46	
환산 소득세액 (조원)	23.5	23.38	0.12	23.15	0.35	22.91	0.59	22.22	1.28	21.85	1.65	20.46	3.04	17.42	6.08	23.03	0.47	
세진 지니계수	0.36681																	
세후 지니계수	0.35620	0.35626	0.35630	0.35638	0.35664	0.35690	0.35439	0.35529	0.35439	0.35622								
변화율(%)	(-2.894)	(-2.877)	(-2.867)	(-2.844)	(-2.775)	(-2.702)	(-3.388)	(-3.142)	(-3.388)	(-2.887)								

주: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

표 3 녹색제품 소득공제 시나리오별 세수 감소액 대비 환경친화적 소비 및 생산 촉진 효과

(단위: 조 원)

구분	녹색제품 구매액 특별공제(1)						(1) + 녹색제품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계층별 혜택 차등화
	보장성 보험료 공제방식			의료비 공제방식			세액의 10%	세액의 20%		
	공제한도 30만 원	공제한도 50만 원	공제한도 100만 원	공제한도 200만 원	공제한도 200만 원					
1분위	0.0	0.0	0.0	0.0	0.0	0.0	2.6	5.1	0.0	
2분위	0.0	0.1	0.3	0.7	0.7	0.6	10.1	20.3	0.2	
3분위	0.5	0.8	1.2	2.2	2.2	1.6	16.5	33.1	0.6	
4분위	0.2	0.5	0.8	1.6	1.6	1.4	12.1	24.2	0.8	
5분위	0.4	0.7	1.0	1.9	1.9	2.3	9.7	19.5	1.3	
6분위	0.4	1.0	1.5	3.1	3.1	3.6	9.9	19.8	2.2	
7분위	1.0	1.8	2.6	5.0	5.0	6.1	12.6	25.2	3.6	
8분위	1.4	3.6	5.8	12.0	12.0	15.3	23.2	46.3	3.1	
9분위	2.4	2.7	7.4	21.0	21.0	25.2	21.7	43.4	3.2	
10분위	3.0	5.9	9.0	17.9	17.9	27.8	19.2	38.5	3.7	
평균	0.3	1.0	1.7	3.7	3.7	4.8	8.9	17.8	1.2	
녹색 총소비(A)	0.06	0.17	0.28	0.61	0.61	0.79	1.46	2.91	0.19	
생산 유발액(B)	0.13	0.40	0.68	1.47	1.47	1.90	3.52	7.03	0.47	
세수 감소액(C)	0.12	0.35	0.59	1.28	1.28	1.65	3.04	6.08	0.47	
세수당 소비(A/C)	<b>0.500</b>	<b>0.486</b>	<b>0.475</b>	<b>0.477</b>	<b>0.477</b>	<b>0.479</b>	<b>0.480</b>	<b>0.479</b>	<b>0.404</b>	
세수당 생산(B/C)	<b>1.083</b>	<b>1.143</b>	<b>1.153</b>	<b>1.148</b>	<b>1.148</b>	<b>1.152</b>	<b>1.158</b>	<b>1.156</b>	<b>1.000</b>	

표 4 녹색제품 소득공제 시나리오별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녹색제품 구매액 특별공제(1)						(1) + 녹색제품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계층별 혜택 차등화
	보장성 보험료 공제방식			의료비 공제방식			세액의 10%	세액의 20%		
	공제한도 30만 원	공제한도 50만 원	공제한도 100만 원	공제한도 200만 원	공제한도 200만 원					
생산유발 효과 (GDP 대비 비중)	133.24 <b>(0.01%)</b>	399.71 <b>(0.04%)</b>	677.60 <b>(0.06%)</b>	1,473.20 <b>(0.14%)</b>	1,473.20 <b>(0.14%)</b>	1,903.36 <b>(0.18%)</b>	3,515.51 <b>(0.33%)</b>	7,032.92 <b>(0.66%)</b>	468.23 <b>(0.04%)</b>	
고용유발 효과 (증가률)	817 <b>(0.01%)</b>	2,451 <b>(0.02%)</b>	4,154 <b>(0.03%)</b>	9,032 <b>(0.06%)</b>	9,032 <b>(0.06%)</b>	11,669 <b>(0.09%)</b>	21,553 <b>(0.15%)</b>	43,117 <b>(0.30%)</b>	2,871 <b>(0.02%)</b>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비변화로 인한 경제 전반의 생산 및 고용 유발의 파급효과는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의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유발의 파급효과는 시나리오 1의 공제한도 100만 원의 경우 약 6,776억 원, 공제한도 200만 원의 경우 약 1조 4,732억 원이 늘어나며, 시나리오 2는 1조 9,034억 원, 시나리오 3의 부가가치세액 10% 환급의 경우 약 3조 5,155억 원, 부가가치세액 20% 환급은 약 7조 330억 원, 시나리오 4는 약 4,682억 원 정도의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라 고용유발 효과도 현행 대비 시나리오 1의 공제한도 100만 원의 경우 약 4,154명, 공제한도 200만 원의 경우 약 9,032명이 늘어나며, 시나리오 2는 1만 1,669명, 시나리오 3의 부가가치세액 10%를 환급해주는 경우 약 2만 1,553명, 부가가치세액 20%를 환급해주는 경우 약 4만 3,117명, 시나리오 4는 약 2,871명의 고용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V. 맺는말

지금까지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친환경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4개 소득세제 지원 방안을 시나리오로 설계, 제시하고,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친환경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친환경제품 지출액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 저감에의 기여와 더불어 소득세 감면에 따른 거시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다. 둘째, 4개 유형의 시나리오별로 소비나 생산 측면의 단위 조세수입 당 효율성 개선 효과는 대체로 비슷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제품 구입에 대한 혜택 부여를 논의할 때, 형평성(재분배효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경우에는 일률적인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세액공제 방식이나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해야 할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제품 구입 정보 제공과 관련 조세행정체계가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

재 기술로 큰 문제가 없으나, 유통매장 내 녹색제품 식별시스템(일명 그린 POS)과 국세청 행정서비스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친환경제품으로 간주된 품목에 대한 지출액 전부를 친환경 소비지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일부 품목은 친환경제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추정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sup>23)</sup> 이와 같은 자료제약으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향후 친환경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정비될 경우,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3) 비록 현재단계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의 어려움이나 불일치 등으로 통계 이용 관련 분석상의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나, 추후에 환경친화적 제품 관련 통계체계 완비 및 환경적 편익개선의 정량적 추정이 이루어진다면 CGE모형을 이용한 비용-편익 분석 등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평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 \_\_\_\_\_. 2012. 「2011년 연말정산 안내」.
- 국제무역연구원. 2009.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 및 시사점」.
- 계선자. 1999. “신세대 소비자의 역할수행 및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15.
- 계선자, 강기정. 1998. “도시주부의 가치성향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03-117.
- 김승래. 2010. “녹색성장과 조세”. 「한국경제연구」 28(1): 179-205.
- 김승래, 김지영. 2010.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김승래, 임병인. 2012.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설계 및 파급효과 연구」. 환경산업기술원 용역보고서. 한국재정학회.
- 김승래, 전영준, 임병인. 2012.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의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30(4): 123-156.
- 김완석. 2010.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398-399.
- 문승식. 2008. “저탄소 환경친화적 소비와 친환경상품 정책”. 「환경정보」 30: 20-23.
- 박춘래, 이은호. 2004.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전산회계 연구」 2(2): 87-107.
- 배순영, 김재영, 송민수. 2009. 「저탄소 환경친화적 소비 실천체제 정비방안」.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세계도시동향」. 238.
- 손광락. 1999.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재정논집」 14(1): 133-168.
- 손상희 외. 2010. “환경친화적 소비역량의 구성체계와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3): 95-119.
- 안종범 외. 2004. 「근로소득 공제제도 간편화 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Issue 3.
- \_\_\_\_\_. 2010. 「(주간)해외에너지정책동향」. Issue 19.

- 유태현. 2010.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29: 24-43.
- 이동식. 2004.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이현우. 2010.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9: 44-63.
- 임봉욱. 1992. “소득세가 보험가입규모에 미치는 영향”. 「재정논집」 6: 131-146.
- 임병인. 2010.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재정학연구」 3(2): 125-156.
- 장원재, 한상용, 박준식. 「대중교통 사용자 소득공제 및 환급체계 도입방안」. 수시 2009-12. 한국교통연구원.
- 전예화, 제미경. 2012. “환경친화적 소비 실천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소비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1(3): 527-537.
- 정요섭. 1993. “보험료 소득공제의 절세효과 분석”.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2010. 「환경친화적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 환경부 보도자료. 2014. 2.17. “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 한국은행. 2013. 「2009년도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해설」.
- 한국조세연구원. 2011. 「소득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eiti.re.kr](http://www.keiti.re.kr)).
- Fullerton, D. 1996. “Why Have Separate Environmental Taxes?”. *Tax Policy and the Economy*, 10: 33-70.
- Metcalf, G. 1999. “A Distributional Analysis of Green Tax Reforms”. *National Tax Journal*, 52(4): 655-81.
- OECD. 2011. *Environmentally Motivated Tax Relief*. Preliminary Report.

## 〈부록〉

본 논문의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소득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부록 표 4>와 같다.<sup>24)</sup> 여기서 소득계층의 10분위 구분 기준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연간기준으로 100만 원에도 못미치는 97.9만 원에 불과하였고, 2분위는 467.8만 원으로 5배로 급격하게 증가, 3분위 이후 소득은 계속 증가하여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소득은 7,162.5만 원으로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73배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극심하였다. 사업소득의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하여 낮았고,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차이가 37.8로 나타나서 근로소득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재산소득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8분위 계층이 9분위 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역시 1분위 계층이 2~4분위 소득계층에 비해서도 작았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3-5분위 계층이 100만 원 대의 연금소득을 받고 있어 이들 계층이 공적연금의 주요 수혜계층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구간 이전소득은 소득계층별로 별 차이가 없고, 특히 5분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sup>25)</sup>는 1, 2분위 소득계층은 연간 납부액이 극히 작아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환경친화적 소비의 지출내역으로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여 추정하여 살펴보면 <부록 표 5>와 같다. 지출내역 중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 관련 물품, 화훼 및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 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녹색인증제품으로 간주한 항목들의 지출 내역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부록 표 6>에서와 같이, 전체 합계액은 1분위

24) 자세한 내용은 김승래, 임병인(2012) 참조.

25) 소득세액은 한국조세연구원(2011) 자료 인용.

26)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귀속분 기준 근로소득자 14,295,000명 가운데 과세자는 8,541,000명으로 59.7%에 불과했음. 나머지 5,754,000명(40.3%)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납세자 3,571,000명 중 과세미달자 723,000명을 더하면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17,866,000명)의 36.3%인 6,477,000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계층의 녹색인증제품 관련 지출액은 연 97.5만 원, 2분위 소득계층은 168.3만 원, 3분위 소득계층은 245.9만 원, 4분위 소득계층은 326.6만 원, 5분위 소득계층은 416.4만 원, 6분위 소득계층은 457.1만 원, 7분위 소득계층은 537.3만 원, 8분위 소득계층은 581.5만 원, 9분위 소득계층은 673.6만 원, 10분위 소득계층은 801.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10분위 소득계층의 지출액은 1분위 대비 8.21배로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배율보다 현저하게 낮아 녹색인증제품과 같은 지출격차는 예상대로 낮았다. 녹색제품의 지출내역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내구재가 작지 않으므로, '가계동향조사' 자료 조사 항목 중에서 내구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해당 내구재를 구입한 가구들만의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내구재로 간주한 지출항목으로는 장롱, 화장대, 침대, 소파, 책상, 의자, 조명기구,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및 선풍기, TV, 정보처리기기(컴퓨터) 등이다.

부표 1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제품 현황 (총괄)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군	기본 제품수	가계동향 조사의 코드번호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EL101-EL107)	EL101. 인쇄용지	114	R760, R820
		EL102. 사무용지	30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종이 점착시트	23	R890
		EL104. 토너카트리지	533	
		EL105. 필기구	10	R840
		EL106. 사무용 종이 제품	3	
		EL107. 문서파일류	29	R820
	사무용기기류 (EL141-EL147)	EL141. 복사기	99	
		EL142. 프린터	197	
		EL143. 팩시밀리	4	
		EL144. 개인용 컴퓨터	299	Q220
		EL145. 노트북 컴퓨터	160	
		EL146. 디지털 프로젝터	20	
		EL147. 컴퓨터용 모니터	94	
	사무용가구등 (EL171-EL178)	EL171. 전기 냉온수기	3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388	
		EL173. 가스 캐비닛 히터	0	
		EL174. 사무용 칸막이	70	
EL175. 사무·학습용 의자		149	M045	
EL176. 교육용 목제 가구		298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136	M040	
EL178. 사무·교육용 금속제 가구	71			
주택·건설용	전자자재류	EL201. 형광램프	43	M060, M830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군	기본 제품수	가계동향 조사의 코드번호
자재·재료 및 설비	(EL201-EL210)	EL202. 형광램프용 안정기	26	
		EL203. 안정기 내장형 램프	35	
		EL204. 감지형 등기구	0	M060,M830
		EL205. 방전램프용 안정기	112	
		EL207. 전선케이블	40	
		EL208. 전기 손건조기	1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36	M060
		EL210. LED 등기구	37	M060
	수도·배관자재류 (EL221-EL229)	EL221. 절수형 수도꼭지	297	
		EL222. 샤워헤드, 수도꼭지 절수 부속	24	
		EL223. 절수형 양변기	103	
		EL224. 양변기용 부속	9	
		EL225. 수도 계량기	48	
		EL226.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장치	0	
		EL227. 수도용 급수관	1	
		EL228. 소변기	4	
	EL229. 비데	0		
	기타자재류 (EL241-EL256)	EL241. 페인트	367	
		EL242. 벽지	24	L320
		EL243. 보온·단열재	109	
		EL244. 건설용 방수재	17	
		EL245. 투수 콘크리트 제품	32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247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0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73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	6	
		EL250. 창호	66	
		EL251. 접착제	32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44	
		EL253. 이중 바닥재	40	L330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6	
		EL255. 초배지	1	L320
	EL256. 장식용 인조피혁	7		
	설비류등 (EL261-EL267)	EL261. 가스 보일러	15	
		EL262. 히트펌프 시스템	1	
		EL263. 열 회수 환기 장치	0	
		EL264. 소방용 스프링클러헤드	0	
		EL265. 발광다이오드 전광판	91	
		EL266. 산업용 가스보일러	0	
		EL267. 무정전전원장치	0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EL301-EL310)	EL301. 비누	16
EL302. 분말 세탁용 세제			33	M810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군	기본 제품수	가계동향 조사의 코드번호
		EL303. 주방용 세제	57	M840
		EL304.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89	
		EL305. 다목적 세정제	29	
		EL306. 섬유유연제	6	
		EL307. 액상 세탁용 세제	31	M810
		EL308. 샴푸	7	U240
		EL309. 린스	0	U240
		EL310. 바디워시	23	U240
	섬유·가죽류 (EL311-EL314)	EL311. 의류	133	K1, K2, K3
		EL312. 가방	31	U420
		EL313. 신발	0	
		EL314. 직물·편물 원단 및 단순가공품	5	
	기타잡화류 (EL321-EL324)	EL321. 화장지	241	U250
		EL322. 방향제	27	
EL323. 모조 귀금속		0		
EL324. 유아용 기저귀		0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기기류 (EL401-EL409)	EL401. 에어컨디셔너	75	M440
		EL402. 세탁기	0	
		EL403. 식기세척기	0	
		EL404. 냉장고	2	M425
		EL405. 김치냉장고	0	
		EL406. 전기 진공청소기	0	
		EL407. 공기청정기	4	M450
		EL408. 전기 주전자, 전기 커피제조기	0	
	EL409. 멀티에어컨디셔너	0		
	전자기기류 (EL431-EL433)	EL431. 텔레비전	176	Q020
		EL432. 비디오 재생·기록기	0	
		EL433. 휴대전화기	0	
	가구류등 (EL481-EL485)	EL481. 가정용 목재 가구	112	M015, M020
		EL482. 불박이형 목재 제품	42	
EL483. 침대		100	M025	
EL484. 응접의자		6	M045	
EL485. 가정용·다중이용시설 금속가구		32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관련제품류 (EL501-EL509)	EL501. 승용차용 타이어	5	
		EL502. 트럭·버스용 타이어	5	
		EL503.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0	
		EL504.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1	
		EL505. 2사이클 엔진오일	0	
		EL506. 자동차용 부동액	0	
		EL507. 비석면 운송부품	5	
		EL508.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1	
		EL509.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0	

대분류	중분류	대상제품군	기본 제품수	가계동향 조사의 코드번호	
	여가·문화관련제품류 (EL551-EL553)	EL551. 낚시 주	0	R760	
		EL552. 낚시 미끼	3		
		EL553. 인쇄물	3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 (EL601-EL610)	EL601. 유압 작동유	16		
		EL602. 인쇄용 잉크	28		
		EL603. 산업용 축전지	33		
		EL604. 수산양식용 부자	0		
		EL605. 산업용 세정제	2		
		EL606. 포장재	70		
		EL607. 수처리제	35		
		EL608. 탈취제	24		
		EL609. 토양개량제	0		
		EL610. 제설제	11		
	조립제품, 장비등 (EL651-EL655)	EL651. 냉동·냉장 쇼케이스	0		
		EL652. 냉·온 음료 자동판매기	0		
		EL653. 저소음 건설기계	13		
		EL654. 레디믹스콘크리트 회수시스템	0		
EL655. 부품·장치 세척기		4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사용제품류 (EL701-EL704)	EL701. 유류	4	L6, O4		
	EL702. 태양열 온수기	0			
	EL703. 태양전지, 자가발전 장치 제품	30			
	EL704. 전기 이륜자동차	0			
	플라스틱·고무·목재제품류 (EL721-EL725)	EL721. 합성수지 제품		355	
		EL722. 고무 제품		64	
		EL723. 목재 성형 제품		103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117	
		EL725. 구조재용합성수지성형원료		2	
	복합 용도 및 기타	금속·무기재료·요업제품류 (EL741-EL746)		EL741. 단련용 동 합금	4
EL742. 주물용 동 합금			4		
EL743.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133		
EL744. 슬래그 가공제품			113		
기타 (EL761-EL767)		EL745. 블록·타일·판재류	409		
		EL746. 골재 및 미분말	67		
		EL761. 재보충 제품	5		
		EL762. 폐기물 감량·감용화 기기	2	L430	
		EL763.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0		
		EL764. 전지	0		
		EL765. 소화기	14		
		EL766. 종량제 쓰레기봉투	7		
		EL767.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8		
합계			7701		

**부표 2 GR(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 현황**

분야	규격명
폐지	신문용지, 골판지용 라이너, 두루마리 화장지, 재활용봉투
폐고무	재활용 트레드타이어,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재활용고무아스팔트, 재활용고무 일반매트, 폐타이어분말
폐플라스틱	재활용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재활용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럭, 재활용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복합창호용 재활용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재활용플라스틱 배수로, 재활용플라스틱 수목보호판, 재활용플라스틱 비탈면 보호블럭
폐요업	재활용콘크리트 고로슬레그시멘트, 재활용점토 벽돌, 재활용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등
폐식용유	재활용 폐식용유(대두유_ 지방산) 등
폐금속	주철 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분말 등
유기성폐기물	부산물비료, 사료용 유지 등
폐유기용제	도료용 재활용 용제 등
폐유리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폐목재	파티클보드 등
폐유리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수산물가공 잔재물	패화석 비료 등
폐수처리오니	하수 슬러지 연료탄 등
폐금속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부표 3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제품으로 인정한 지출내역**

분류기호 및 품목명

K1(직물 및 외의), K2(내의), K3(기타 의복), L320(벽지), L330(이중바닥재), L430(쓰레기 처리), L6(연료), M015(장롱), M020(화장대), M025(침대), M040(책상), M045(의자), M060(조명기구), M425(일반냉장고), M440(에어컨 및 선풍기), M450(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M810(세탁용세제), M830(전구), M840(주방 및 청소용세제), O4(운송기기연료비), Q020(TV), Q220(컴퓨터), R760(기타인쇄물), R820(종이문구류), R840(필기 및 미술용구), R890(기타문구류), U230(세면비누), U240(삼푸 및 린스), U250(화장지), U420(가방)

부표 4 소득계층별 소득유형 (2010년)

(단위: 만 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소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
1분위	97.9	90.5	4.4	2.9	31.5	17.8	1.5	0.0	12.2
2분위	467.8	424.5	27.1	16.3	139.5	116.6	3.5	1.1	18.3
3분위	968.5	844.8	59.0	64.8	270.0	213.8	20.3	5.9	30.0
4분위	1,509.6	1,279.7	118.5	111.4	446.3	364.4	36.1	20.7	25.1
5분위	2,045.8	1,569.0	247.2	229.6	598.7	475.8	69.7	29.1	24.2
6분위	2,486.6	1,922.0	333.3	231.3	670.2	525.4	80.1	22.5	42.2
7분위	2,893.6	2,115.2	458.9	319.5	900.3	734.3	104.6	16.4	45.0
8분위	3,747.8	2,897.4	553.1	297.3	900.0	649.6	188.3	27.4	34.6
9분위	4,587.0	3,625.8	573.0	388.2	1,083.0	732.1	230.2	51.3	69.4
10분위	7,162.5	5,427.8	1,265.9	468.8	1,192.4	840.7	244.6	51.5	55.6
전체가구	2,597.3	2,020.1	364.1	213.0	623.2	467.1	97.9	22.6	35.7

  

구분	재산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경상 소득	소득세 합계
		소계	공적 연금	세금 환급금	가구간 이전	기타 이전소득			
1분위	3.2	315.9	41.2	0.0	127.3	0.2	99.0	448.5	1.0
2분위	12.9	421.9	73.4	0.1	189.6	1.5	113.3	1,042.1	7.0
3분위	22.2	428.4	130.9	0.1	167.5	5.3	131.9	1,689.1	17.0
4분위	6.4	406.8	136.8	1.0	131.8	8.2	145.8	2,369.1	28.0
5분위	7.2	320.1	114.1	1.3	97.2	2.8	130.1	2,971.9	52.0
6분위	12.0	384.6	85.2	4.2	186.2	3.3	129.9	3,553.4	77.0
7분위	10.3	365.3	77.6	6.4	176.2	2.1	182.7	4,169.5	125.0
8분위	33.8	278.9	75.7	13.2	110.5	2.1	123.3	4,960.5	194.0
9분위	13.1	331.7	75.4	24.4	140.5	3.0	190.3	6,014.8	287.0
10분위	44.8	364.6	60.5	51.8	196.8	5.9	174.9	8,764.3	639.0
전체가구	16.6	361.8	87.1	10.3	152.3	3.4	142.1	3,598.9	143.0

부표 5 소득계층별 가계동향조사의 대분류별 지출액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1분위	152.3	1.6	13.2	26.2	2.3	5.5	12.6	3.4
2분위	205.8	2.0	21.2	30.8	3.0	9.8	13.9	5.3
3분위	247.9	2.1	25.2	34.5	3.0	13.6	12.2	6.3
4분위	277.3	2.1	28.5	35.5	3.6	19.1	11.8	7.6
5분위	321.2	2.3	33.5	35.1	4.3	24.7	12.1	10.3
6분위	339.9	2.8	37.6	38.2	4.5	25.1	11.9	10.5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구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7분위	360.7	2.7	42.8	37.7	4.4	28.7	11.8	12.0
8분위	386.5	2.9	47.4	40.0	4.7	32.1	11.5	12.3
9분위	420.7	3.2	55.7	44.3	5.4	32.8	13.8	12.0
10분위	489.7	4.2	68.2	49.1	5.9	36.3	13.8	16.0
전체가구	320.2	2.6	37.3	37.1	4.1	22.8	12.6	9.6
구분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1분위	2.6	3.4	12.4	18.5	133.0	26.3	98.5	35.9
2분위	4.0	4.9	18.8	44.1	206.7	38.8	101.1	77.3
3분위	4.9	7.5	26.7	75.1	232.3	49.4	118.4	150.3
4분위	6.4	9.1	33.0	101.6	232.6	59.5	118.4	231.2
5분위	7.0	11.5	36.7	134.9	249.8	63.3	131.5	270.2
6분위	7.1	12.4	32.4	145.7	266.0	77.4	154.1	339.3
7분위	8.6	12.1	34.7	187.1	287.1	105.9	167.3	347.7
8분위	8.6	14.3	32.5	200.7	267.1	100.9	167.0	437.4
9분위	9.3	15.4	35.9	260.4	305.0	143.5	209.6	466.5
10분위	10.6	16.3	35.3	316.3	346.2	188.9	254.2	621.1
전체가구	6.9	10.7	29.8	148.5	252.6	85.4	152.0	297.7
구분	통신	오락 및 문화	화훼 관련용품	애완동물 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1분위	26.8	23.6	3.0	1.0	0.2	0.6	10.7	0.0
2분위	61.1	35.3	3.2	1.3	0.4	2.6	12.9	0.2
3분위	90.4	59.6	2.6	2.3	0.9	4.8	17.7	0.2
4분위	127.1	80.4	3.1	1.9	0.5	7.2	22.1	0.8
5분위	156.4	104.2	3.0	1.4	1.4	10.6	25.3	0.3
6분위	168.6	114.3	3.0	1.5	0.7	9.0	26.7	0.2
7분위	174.6	156.5	4.1	1.6	1.0	17.5	29.8	0.5
8분위	181.3	176.9	3.5	2.0	0.7	19.9	30.5	0.3
9분위	192.3	214.7	4.8	2.5	2.9	22.2	32.5	0.4
10분위	202.7	280.5	5.8	2.2	1.2	36.1	39.1	0.7
전체가구	138.1	124.6	3.6	1.8	1.0	13.1	24.7	0.4
구분	서적	기타 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1분위	1.2	0.3	0.5	3.1	7.2	28.4	34.4	100.1
2분위	3.3	0.5	1.1	3.9	29.7	85.0	77.8	203.5
3분위	6.8	1.0	1.6	7.3	77.7	164.5	106.7	317.0
4분위	12.1	1.2	2.6	7.3	126.9	221.8	173.1	391.2
5분위	19.1	1.9	3.7	8.5	203.9	286.6	213.3	493.6
6분위	20.9	2.0	4.2	10.5	229.5	306.3	231.1	638.3

구분	서적	기타 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7분위	26.2	2.2	4.7	18.5	312.7	361.7	281.2	721.2
8분위	37.5	3.1	5.7	20.2	419.7	404.2	280.6	921.4
9분위	35.9	4.3	5.8	41.0	511.1	439.8	331.0	1218.7
10분위	49.5	6.1	7.0	51.5	670.4	545.3	384.5	1959.2
전체가구	21.3	2.3	3.7	17.2	258.9	284.4	211.4	696.6

부표 6 소득계층별 친환경제품 지출액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합계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 의복	벽지	이중바닥재	쓰레기 처리	연료비
1분위	97.5	11.7	1.8	1.5	0.2	0.4	0.5	57.8
2분위	168.3	29.2	3.6	2.6	0.1	0.2	0.7	81.6
3분위	245.9	52.2	5.3	3.4	0.3	0.2	1.2	93.0
4분위	326.6	70.4	7.1	5.0	0.2	0.3	1.3	102.9
5분위	416.4	94.1	8.8	6.8	0.3	0.3	1.7	118.3
6분위	457.1	101.5	10.3	7.3	0.4	0.4	1.6	126.9
7분위	537.3	133.3	12.4	8.7	0.4	0.3	1.8	132.3
8분위	581.5	143.3	13.2	9.3	0.3	0.3	1.9	138.4
9분위	673.6	191.4	15.7	11.0	0.5	0.6	1.9	144.3
10분위	801.0	239.1	17.9	13.0	0.4	0.2	2.0	156.3
전체가구	430.6	106.7	9.6	6.8	0.3	0.3	1.5	115.2
구분	장롱	화장대	침대	책상	의자	조명 기구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1분위	81.9	0.0	41.5	0.0	2.1	7.5	109.0	14.0
2분위	14.9	6.2	77.6	8.7	4.0	4.0	87.1	33.9
3분위	49.0	2.7	66.6	20.6	6.9	4.8	97.5	20.0
4분위	28.3	38.8	149.5	9.6	7.0	3.0	100.0	17.9
5분위	34.0	0.0	71.3	8.8	4.5	4.9	83.2	30.6
6분위	26.0	49.7	81.2	10.4	7.9	4.8	127.8	35.4
7분위	63.7	26.7	73.9	19.1	9.6	4.2	95.8	24.2
8분위	27.1	0.0	84.5	13.8	9.9	4.1	125.8	21.4
9분위	115.1	58.7	99.6	18.3	10.4	8.8	125.0	28.5
10분위	49.9	29.2	121.5	24.4	10.2	6.3	159.6	28.4
전체가구	51.0	33.4	90.8	15.6	8.4	5.5	114.9	26.1
구분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세탁용 세제	전구	주방 및 청소용세제	운송 기구 연료비	TV	정보처리기기 (컴퓨터)	기타 인쇄물
1분위	0.0	1.9	0.1	0.4	11.2	29.6	25.9	0.0
2분위	16.6	2.9	0.2	0.6	31.4	43.7	18.7	0.0
3분위	16.5	3.7	0.2	0.8	61.6	46.8	30.9	0.1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 지원의 도입방안

구분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세탁용 세제	전구	주방 및 청소용세제	운송 기구 연료비	TV	정보처리기기 (컴퓨터)	기타 인쇄물
4분위	18.3	4.0	0.3	0.9	99.7	66.3	28.6	0.1
5분위	23.7	5.2	0.3	1.0	135.8	40.3	33.5	0.1
6분위	18.1	6.1	0.4	1.4	150.9	82.5	30.2	0.2
7분위	16.6	5.9	0.4	1.3	168.7	86.2	45.8	0.2
8분위	22.7	6.4	0.6	1.3	196.8	74.0	47.2	0.1
9분위	18.8	6.8	0.6	1.5	201.4	106.5	51.4	0.4
10분위	22.9	6.6	0.8	1.4	255.1	124.3	49.7	0.1
전체가구	20.2	4.9	0.4	1.1	131.3	81.8	41.0	0.1
구분	종이문구류	필기 및 미술용품	기타 문구류	세면 비누	샴푸 및 린스	화장지	가방	
1분위	0.16	0.19	0.13	0.14	0.52	1.43	0.45	
2분위	0.36	0.33	0.38	0.30	1.07	2.34	1.37	
3분위	0.65	0.42	0.57	0.34	1.64	3.43	2.20	
4분위	0.94	0.87	0.83	0.38	2.54	4.93	3.94	
5분위	1.17	1.00	1.52	0.69	3.01	5.45	6.08	
6분위	1.35	1.09	1.74	0.61	3.33	6.30	5.27	
7분위	1.45	1.45	1.83	0.65	3.79	6.62	8.32	
8분위	1.68	1.53	2.48	0.48	3.92	6.47	9.86	
9분위	1.66	1.79	2.32	0.74	4.53	6.69	14.70	
10분위	2.07	2.40	2.58	1.01	5.29	7.05	16.23	
전체가구	1.15	1.11	1.44	0.53	2.96	5.07	6.84	